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0일, 이수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 22.)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8.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

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되, 늘어난 정원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0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준정부기관 상임·비상임이사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준정부기관 상임·비상임이사의 추천 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 이를 규

정할 실익이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국민연금법」에서는 ‘이사’를 ‘비상임이사’만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일관된 용어 사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의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 22.)

(소위원장 김미애)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8. 20.)

(소위원장 이수진)

현재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1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를 각각 대표하는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 대표 2인’ 외에 ‘노동이사 1명’이 추가될 경우 사회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직역 간 균형’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반면, 양대노총에서 각 1명씩 추천한 ‘근로자 대표 2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가입자를 대표하려는 취지이고, ‘노동이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소속 노동자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3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0조제2항은 현행을 유지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제1항제2호 중 “소속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u>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 <u><신 설></u>	제30조(임원) ① ----- ----- ----- <u>-----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u>	제30조(임원) ① ----- ----- ----- ----- ----- ----- ----- -----.
<u><신 설></u>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 한	1. (개정안과 같음) 2. -----

	<u>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u>	-----<u>소속 근로자(제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
<신 설>	3. <u>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u>	3. (개정안과 같음)
② <u>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u>	② <u>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u>	② <u>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u>

및 감사는 이사장
의 제청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면
한다.

에 따라 공단에
구성한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임
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서 보건복지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
의 제청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면
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이사
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
람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
한다. 단, 기금이
사의 경우에는 제
31조 및 제32의
규정에 따른다.

3. 감사는 임원추천
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조

③ (생략)	<u>에 따른 공공기관</u> <u>운영위원회의 심</u> <u>의·의결을 거친</u> <u>사람 중에서 기획</u> <u>재정부장관의 제</u> <u>청으로 대통령이</u> <u>임명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u>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u>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임원) ① ----- ----- -----10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신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신설>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

<u><신 설></u> ② · ③ (생 략)	<u>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u> <u>를 받은 사람 1명</u> <u>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u> <u>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u> <u>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u> <u>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u> <u>무원 1명</u> ② · ③ (현행과 같음)
--	--